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12. 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11월 23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대통령령 제15916호) 과 동규정시행규칙 (교육부령 제725호) 이 98.10.16자로 제정·공포되고, 총정원 제 도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도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,828명으로 함 (안 제2조)
-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,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3조)
-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함 (안 부칙 제2조)
<정원조정 내용 (안 제2조)>

| 구 분 | 현 재 | 조 정 | 증 감 |
|--|-------|-------|------|
| 계 | 3,130 | 2,828 | △302 |
| 교육위원회 의사국 | 15 | 13 | △2 |
|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| 3,115 | 2,815 | △300 |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이 98.10.16자로 제정·공포되고,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도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3,130명에서 302명을 감축하여 2,828명으로 하고
-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